

제35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8월29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38.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3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5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8.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1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112.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113.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1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 · 정재호 · 전재수 · 신창현 · 이동섭 · 박정 · 유은혜 · 권미혁 · 민병두 · 신동근 · 유승희 · 어기구 · 강병원 · 김병관 · 유동수 · 문미옥 · 김철민 · 고용진 · 송영길 · 백혜련 · 조승래 · 표창원 · 정성호 · 박경미 · 기동민 · 전현희 · 최운열 · 서영교 · 강훈식 · 한정애 · 김상희 의원 발의) 10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종희 · 박광운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고용진 의원 발의) 21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홍문중 · 이종배 · 김도읍 · 성일중 · 김현아 · 김정재 · 이은권 · 정갑윤 · 문진국 의원 발의) 21
1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윤관석 · 권미혁 · 김해영 · 강병원 · 서영교 · 김상희 · 도중환 · 전해숙 · 박광운 의원 발의) 21
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20.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욱 · 박인숙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중 · 강효상 의원 발의) 21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백재현 · 정인화 · 김관영 · 유성엽 · 윤영일 · 윤소하 · 전해숙 · 박준영 의원 발의) 21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해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문진국 · 김정재 · 金成泰 · 이은권 · 송석준 · 송희경 · 엄용수 · 이양수 · 정갑윤 의원 발의) 21
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혜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 전혜숙 · 윤영일 · 강창일 ·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 이용주 · 김해영 의원 발의) 21
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욱 · 박인숙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종 · 강효상 의원 발의) 31
3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이동섭 · 채이배 · 김경진 · 김동철 · 오세정 · 김삼화 · 김수민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31
3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박찬대 · 정성호 · 홍의락 · 추혜선 · 민병두 · 김해영 · 홍익표 · 김종훈 · 박영선 · 박경미 · 김영주 · 박광온 · 강병원 · 이춘석 · 유동수 · 권미혁 · 인재근 · 박남춘 · 정동영 · 최인호 의원 발의) 31
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김경진 · 김영주 · 강창일 · 황주홍 · 김관영 · 민병두 · 김종민 · 박남춘 · 이찬열 · 안규백 · 박주민 의원 발의) 31
3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윤호중 · 이춘석 · 김병욱 · 김해영 · 신경민 · 이종걸 · 김관영 · 안규백 의원 발의) 31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신경민 · 박남춘 · 조승래 · 정재호 · 설훈 · 기동민 · 김상희 · 신창현 · 민병두 · 김영호 · 우원식 · 문미옥 · 김종민 · 제윤경 · 송옥주 · 이훈 · 박찬대 · 고용진 · 김철민 · 황희 · 송영길 · 박경미 · 유승희 의원 발의) 31
3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균현 의원 발의) 32
3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천정배 · 이동섭 · 김광수 · 송기석 · 최경환(국) · 김수민 · 윤영일 · 장정숙 · 이용호 · 정동영 · 김중로 · 김성식 · 강창일 · 김정우 · 김종훈 · 김중회 · 김경진 · 윤관석 · 박주현 · 정인화 · 조배숙 · 오세정 · 최도자 · 심재권 · 유성엽 의원 발의) 32
37.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균현 의원 발의) 32
38.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김영호 · 백혜련 · 안규백 · 박주민 · 김성수 · 윤관석 · 박찬대 · 박남춘 · 이찬열 · 김부겸 · 황주홍 · 박용진 의원 발의) 32
3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주승용 · 황주홍 · 김중회 · 이용호 · 김중로 · 김삼화 · 유성엽 · 박주현 · 박선숙 · 정인화 · 박준영 · 윤소하 · 이용주 · 김경진 의원 발의) 32
4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박정 · 이재정 · 김해영 · 송기현 · 김한정 · 문미옥 · 박완주 · 윤후덕 · 기동민 · 오영훈 · 이춘석 · 윤호중 · 박범계 · 안호영 · 이훈 · 김병욱 · 금태섭 · 조웅천 의원 발의) 32
4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박범계 · 금태섭 · 백혜련 · 정성호 · 조웅천 · 김두관 · 안호영 · 김현권 · 김철민 · 강훈식 · 윤관석 · 안민석 · 송기현 · 제윤경 · 최인호 · 이훈 · 권철승 · 송영길 · 우원식 · 위성곤 · 김병기 · 신창현 · 박재호 · 임종성 · 소병훈 · 송옥주 · 조정식 · 유은혜 · 김태년 · 김성수 · 손혜원 · 박정 · 박경미 · 김영호 · 윤후덕 · 조승래 · 이원욱 · 이춘석 · 한정에

- 김한정 · 정춘숙 · 김상희 · 박찬대 · 박남춘 · 이석현 · 박영선 · 백재현 · 어기구 · 전해철 · 정재호 · 전해숙 · 권미혁 · 설훈 · 기동민 · 이철희 · 김병관 · 문미옥 · 강병원 · 박광온 의원 발의) 32
- 4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권칠승 · 김병욱 · 김영주 · 김해영 · 박광온 · 박재호 · 박찬대 · 백재현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이재정 · 이춘석 · 전재수 · 최인호 의원 발의) 32
- 4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강석호 · 김도읍 · 金成泰 · 김명연 · 이양수 · 김현아 · 권석창 · 김정재 · 박인숙 · 이우현 · 박찬우 · 이은권 · 윤상현 의원 발의) 32
- 4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옥 · 박인숙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중 · 강효상 의원 발의) 32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 · 윤한홍 · 함진규 · 박명재 · 유기준 · 김정재 · 주호영 · 유민봉 · 윤후덕 · 이현재 의원 발의) 32
-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강창일 · 조승래 · 홍문표 · 박영선 · 도종환 · 이원욱 · 유은혜 · 노웅래 · 김영주 · 김영춘 의원 발의) 32
-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경대수 · 이종명 · 박순자 · 김종대 · 전해숙 · 김종석 · 홍문표 · 유의동 · 김영우 · 장제원 의원 발의) 32
- 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황주홍 · 남인순 · 김중로 · 박선숙 · 이용호 · 정인화 · 김수민 · 김관영 · 박지원 · 박주선 · 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74) 33
- 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황주홍 · 남인순 · 이용호 · 정인화 · 김수민 · 신용현 · 김관영 · 박지원 · 이용주 · 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3) 33
-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이우현 · 유민봉 · 최연혜 · 이명수 · 정태옥 · 권석창 · 홍철호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33
- 5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회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고용진 의원 발의) 33
- 52.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박남춘 · 우원식 · 윤관석 · 신경민 · 안민석 · 이춘석 · 김경협 · 노웅래 · 김상희 · 조승래 의원 발의) 33
- 5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회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박주민 의원 발의) 33
- 5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군현 의원 발의) 33
- 5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 · 추경호 · 김정재 · 이현재 · 김광림 · 조경태 · 엄용수 · 광상도 · 정중섭 · 김진태 · 이완영 · 김태흠 · 민경욱 · 이만희 의원 발의) 33
- 5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성일중 · 이태규 · 金成泰 · 정용기 · 김석기 · 김종석 · 조훈현 · 문진국 · 김승희 · 윤재옥 · 안상수 의원 발의) 33
- 5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군현 의원 발의) 33
-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 33
- 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박덕흠 · 김석기 · 이완영 · 장석춘 · 金成泰 · 조경태 · 문진국 · 이명수 · 전희경 의원 발의) 33
- 6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기동민 · 김정우 · 소병훈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인재근 · 장정숙 · 최명길 의원 발의) 33

6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안규백 · 송영길 · 신창현 · 정성호 · 박홍근 · 김철민 · 윤후덕 · 서영교 · 이해찬 · 송옥주 · 박정 · 김성수 · 변재일 · 황희 의원 발의) 33
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86) 33
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8) 33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박정 · 신용현 · 이동섭 · 김영춘 · 최도자 · 추혜선 · 이해찬 · 박주선 · 장병완 · 손금주 의원 발의) 33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기동민 · 김정우 · 소병훈 · 이원욱 · 이재정 · 인재근 · 장정숙 · 최명길 · 황희 의원 발의) 33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강석호 · 金成泰 · 김명연 · 이양수 · 김현아 · 권석창 · 김정재 · 박인숙 · 이우현 · 박찬우 · 이은권 · 윤상현 의원 발의) 33
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문미옥 · 윤소하 · 진선미 · 김성수 · 박광온 · 도종환 · 이원욱 · 박홍근 · 이춘석 · 김현미 · 윤호중 의원 발의) 34
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추미애 · 김해영 · 박홍근 · 안규백 · 이채익 · 김병관 · 신동근 · 박광온 · 윤호중 · 이원욱 · 손혜원 · 설훈 의원 발의) 34
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희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박주민 의원 발의) 34
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조정식 · 이찬열 · 윤관석 · 문미옥 · 이춘석 · 도종환 · 안민석 · 제윤경 · 박광온 · 송영길 의원 발의) 34
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안규백 · 최인호 · 박광온 · 우원식 · 황주홍 · 홍익표 · 권미혁 · 조웅천 · 박용진 · 정성호 · 이춘석 · 박범계 · 박경미 · 박남춘 · 박정 의원 발의) 34
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윤관석 · 최도자 · 김병욱 · 이춘석 · 박성중 · 이원욱 · 정춘숙 · 고용진 · 김영진 · 기동민 · 인재근 · 민병두 의원 발의) 34
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박정 · 박경미 · 우원식 · 박재호 · 김영호 · 임종성 · 박찬대 · 강창일 · 윤관석 · 손혜원 · 김철민 · 김영춘 · 이해찬 · 박남춘 의원 발의) 34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황주홍 · 소병훈 · 노웅래 · 박홍근 · 정성호 · 김성수 · 김정우 · 황희 · 박남춘 · 김영춘 · 박경미 의원 발의) 34
7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정인화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이개호 · 황주홍 · 민홍철 · 김철민 · 서영교 · 박재호 · 김수민 · 전재수 · 김경수 · 김중희 · 박남춘 · 서형수 의원 발의) 34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욱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중 · 강효상 의원 발의) 34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정미 · 오세세 · 조배숙 · 소병훈 · 조정식 · 윤관석 · 박홍근 · 노웅래 · 이원욱 · 이용득 · 이개호 · 서영교 · 박정 · 김상희 · 박찬대 · 김영춘 의원 발의) 34
78.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김경진 · 김관영 · 김동철 · 박선숙 · 박지원 · 송기석 · 신용현 · 윤영일 · 정동영 · 조배숙 의원 발의) 34
8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이동섭 · 채이배 · 김경진 · 김동철 · 오세정 · 김삼화 · 김수민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34
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김영호 · 한정애 · 김정우 · 조배숙 · 신창현 · 이철희 · 김영춘 · 인재근 · 이종걸 · 김철민 의원 발의) 34

8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조정식 · 이찬열 · 윤관석 · 문미옥 · 이춘석 · 도종환 · 안민석 · 제윤경 · 박광온 · 송영길 의원 발의)	34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박남춘 · 남인순 · 신창현 · 신경민 · 김병관 · 양승조 · 조승래 · 정재호 · 설훈 · 기동민 · 김상희 · 민병두 · 김영호 · 우원식 · 문미옥 · 김종민 · 제윤경 · 송옥주 · 이훈 · 박찬대 · 고용진 · 김철민 · 황희 · 송영길 · 유승희 의원 발의)	34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박영선 · 이원욱 · 조승래 · 손혜원 · 박주민 · 김병관 · 박용진 · 서영교 · 진선미 · 김성수 · 표창원 의원 발의)	34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 · 경대수 · 김재경 · 이주영 · 오신환 · 정운천 · 이채익 · 정갑윤 · 이은재 · 홍일표 의원 발의)	34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정인화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민홍철 · 이개호 · 황주홍 · 김철민 · 서영교 · 박재호 · 김수민 · 전재수 · 김경수 · 김종희 · 박남춘 · 서형수 의원 발의)	34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원욱 · 서영교 · 김해영 · 유동수 · 김종훈 · 김상희 · 추혜선 · 노회찬 · 황희 · 인재근 의원 발의)	35
8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안규백 · 황주홍 · 이찬열 · 송옥주 · 조정식 · 변재일 · 박남춘 · 정재호 · 김영진 의원 발의)	35
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 · 윤후덕 · 조정식 · 김경협 · 김병욱 · 최인호 · 소병훈 · 송석준 · 양승조 · 이춘석 · 전현희 의원 발의)	35
9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9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주승용 · 윤소하 · 표창원 · 김정우 · 전혜숙 · 원혜영 · 남인순 · 윤관석 · 김영진 의원 발의)	35
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안규백 · 서영교 · 장정숙 · 임종성 · 정재호 · 인재근 · 박주민 · 김상희 · 송기현 의원 발의)	35
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정재호 · 신창현 · 안규백 · 이종걸 · 윤관석 · 김철민 · 남인순 · 인재근 · 박정 · 황주홍 의원 발의)	35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신경민 · 김영주 · 전혜숙 · 정춘숙 · 강창일 · 이종걸 · 서영교 · 윤영일 · 이훈 의원 발의)	35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박광온 · 윤호중 · 박재호 · 박용진 · 권칠승 · 신경민 · 최인호 · 백혜련 · 전재수 · 강병원 · 서영교 · 이찬열 의원 발의)	35
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최인호 · 이학영 · 진선미 · 송옥주 · 문미옥 · 우원식 · 김정우 · 김현권 · 권미혁 · 김현미 의원 발의)	35
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김상희 · 이찬열 · 안규백 · 박정 · 박주민 · 박용진 · 고용진 · 이종걸 · 여기구 의원 발의)	35
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 · 정태옥 · 채이배 · 정갑윤 · 윤상현 · 김도읍 · 이은권 · 박명우 · 박명재 · 김종태 의원 발의)	35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변재일 · 안규백 · 서영교 · 장정숙 · 임종성 · 정재호 · 인재근 · 박주민 · 김상희 · 송기현 의원 발의)	35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위성곤 · 박찬대 · 남인순 · 최운열 · 여기구 · 이철희 · 김철민 · 정춘숙 · 최인호 · 이훈 · 박정 · 조용천 · 권미혁 · 정재호 · 전혜숙 · 기동민 · 이원욱 의원 발의)	35
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 · 김영진 · 김경협 · 윤호중 · 변재일 · 최인호 · 신경민 · 이훈 · 김영주 · 김두관 · 박용진 · 고용진 · 김병관 · 안호영 의원 발의)	35

10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이원욱 · 이재정 · 전혜숙 · 고용진 · 김영진 · 이춘석 · 표창원 · 기동민 · 손혜원 의원 발의) 35

10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 · 배덕광 · 윤상현 · 조경태 · 민경욱 · 이현승 · 김석기 · 김성찬 · 곽대훈 · 이종명 · 김성원 · 염동열 · 박덕흠 의원 발의) 35

1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권미혁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용진 · 박정 · 안규백 · 우원식 · 이춘석 · 정성호 · 조용천 · 최인호 · 홍익표 · 황주홍 의원 발의) 35

1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김상희 · 임종성 · 서영교 · 윤후덕 · 박찬대 · 강창일 · 오영훈 · 위성곤 · 전재수 · 문미옥 · 민병두 · 조정식 · 소병훈 · 송기현 · 도종환 의원 발의) 35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윤관석 · 최도자 · 김병욱 · 이춘석 · 박성중 · 이원욱 · 정춘숙 · 고용진 · 김영진 · 기동민 · 인재근 · 민병두 의원 발의) 35

1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우현 · 박덕흠 · 김기선 · 곽대훈 · 강석진 · 지상욱 · 김석기 · 이채익 · 이명수 의원 발의) 36

10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관영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희 · 김중로 · 오세정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의원 발의) 36

1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 노웅래 · 강창일 · 김현권 · 위성곤 · 황주홍 · 홍익표 · 김철민 · 김정우 · 박정 의원 발의) 36

11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철민 · 소병훈 · 김현권 · 윤후덕 · 이원욱 · 김영진 · 유동수 · 박찬대 · 이개호 · 위성곤 · 김병기 · 신창현 · 김한정 · 송기현 · 박정 · 황희 · 기동민 · 백재현 · 유승희 · 임종성 · 노웅래 의원 발의) 36

112.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 · 김관영 · 오세정 · 조배숙 · 정인화 · 장정숙 · 주승용 · 남인순 · 소병훈 · 김광수 의원 발의) 36

113.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박영선 · 이원욱 · 조승래 · 손혜원 · 박주민 · 김병관 · 박용진 · 서영교 · 진선미 · 김성수 · 표창원 의원 발의) 36

1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김중훈 · 김관영 · 민병두 · 이동섭 · 김중희 · 윤영일 · 박준영 · 장정숙 · 오세정 · 서영교 의원 발의) 36

1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철민 · 윤후덕 · 김정우 · 오세정 · 윤관석 · 박홍근 · 정동영 · 이개호 · 신경민 · 조정식 의원 발의) 36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주현 · 주승용 · 정동영 · 이용호 · 김중희 · 윤소하 · 정인화 · 유성엽 · 이동섭 · 정유섭 · 도종환 의원 발의) 36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김해영 · 우원식 · 이춘석 · 박찬대 · 김병욱 · 백재현 · 최인호 · 권칠승 · 이재정 · 김영주 · 위성곤 · 전재수 · 박재호 · 유동수 · 박광온 · 송영길 의원 발의) 36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박남춘 · 남인순 · 신창현 · 박경미 · 신경민 · 김병관 · 조승래 · 정재호 · 설훈 · 기동민 · 김상희 · 김영호 · 우원식 · 문미옥 · 김종민 · 제윤경 · 송옥주 · 이훈 · 박찬대 · 고용진 · 김철민 · 황희 · 송영길 · 유승희 의원 발의) 36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김기선 · 김순례 · 문진국 · 박덕흠 · 서청원 · 송석준 · 송희경 · 이우현 · 이종명 · 정용기 의원 발의) 36

○ 현안질의 43

(14시13분 개의)

심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타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요청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 및 타위법 미상정 안건 등 총 119건에 대한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번 개정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제1항의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오셨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원 위원** 잘하시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심기준·정재호·전재수·신창현·이동섭·박정·유은혜·권미혁·민병두·신동근·유승희·어기구·강병원·김병관·유동수·문미옥·김철민·고용진·송영길·백혜련·조승래·표창원·정성호·박경미·기동민·전현희·최운열·서영교·강훈식·한정애·김상희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항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후원 기업의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동연 부총리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부총리 수고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원도심·구도심, 옛날 도시의 중간 그런 곳에 과거 정부 청사로 쓰던, 예를 들면 관세청 이런 건물들이 이제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자체가 공동화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거의 흉가처럼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곳은 대개 주차 시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차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기재부 국고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라도 넘겨서 그러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일부 발표도 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 중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국토의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장부 가격으로 판다든지 또는 그것을 한시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작은 평수인데 지자체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각 말고 일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지자체가 재정 상태가 좋다고 하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대개 그런 소도시의 지자체가 재정 상태가 아주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흥가로 두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그러한 활용 방안을 찾아봐 줘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부총리님, 내년도 정부 예산 429조가 국무회의 통과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오늘 아침에 통과됐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랬지요?

지난 예결위에서 결산심사 때 부총리께서 국가채무를 700조 내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정확한 얘기는 내년 말 기준으로 700조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적자국채를 몇 조 발행하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에 28조 정도 발행합니다.

○오신환 위원 과거의 적자국채 발행과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금년 규모하고 거의 같은 규모고요. 작년, 제작년에는 저희가 40조, 삼십몇 조 규모였기 때문에 적자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바람직한 모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올해도 자연 세수분을 통해서 추경과 다른 여러 가지 썼잖아요. 내년도도 자연 증가 세수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세수 초과분을 한 15조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잡힌 세입예산보다 15조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예산 정도의 세수가 걷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15조분씩, 지금 자연 세수분 60조가, 지금 문제인 정부 178조의 공약가계부 내용 안에 60조의 자연 세수분이 들어가는 것이 지난번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 공약에 없었던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약에서 세입 조정을 통해서, 세입 확대를 통해서, 비과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83조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 안의 내용들로 봐서는 과거 공약에서 육십몇 조였던 것이, 60조가 지금 말씀은 자연 세수분이 증가하는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중에 15조가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앞에까지는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그 뒷부분이 무슨……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초과분이 예산 대비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국정과제

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중에서 세입 쪽에 83조가 있는데 그중에 60조가 세수 초과분이거든요. 그것은 기준이 작년에 정부에서 짠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60조가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상의 문제지요. 금년에 15조가 더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그 15조 더 들어오는 게 베이스업(base up)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저희가 세입예산을 더 잡은 것이지요.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8조의 그런 공약이 내년도에는 15조가 거기에 얹혀져서 지출에 들어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세입에서는 금년의 15조분이 베이스업돼서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고요. 그게 들어오는 쪽이고요. 나가는 쪽은 178조 중에 약 18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자연 세수분 15조가 거기에 들어가서 3조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세입이 확보가 되면 공약에 18조가 얹혀져 있으니 그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세입이 15조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전체 세입 속에 들어오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가 429조 중에 18조 5000억이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합계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15조 더 들어오는 것으로 18조를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전체 합계로 세출과 세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429조는 금년도 400조보다 한 29조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그것은 국정과제에 들어갈 돈 한 18조 5000억 그다음에 국정과제 외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한 7조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직접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플러스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11조 5000억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그것이 429조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15조 초과 세수는 이미 세입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 속에 묻혀 들어가는 돈이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700조 국가채무를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문제인 정부 5년 동안 178조라고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세입·세출에서 잘 녹여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조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내년 말 국가채무를 700조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산안 발표하면서는 금년도에 국가채무 비율이 39.7%거든요. GDP 대비 그렇다는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0.1%p를 낮추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9.6%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액은 좀 늘어났지만 그만큼 분모인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조에 대해서는 세출 쪽에서는 당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낸 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전부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뺄 것은 빼고 했고요. 그중에, 178조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채무는 내년 말 기준으로 700조라고 그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700조 이내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700조 이내인데 국가부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가부채도 저희가 나름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퍼센트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그 숫자는 저희가 발표하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이미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채무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채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 이것 다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장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부채를 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전문적으로 D1, D2, D3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에 대한 것이고 더 확대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공까지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준이 OECD 선진국에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구요.

다만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발채무 쪽을 좀 걱정하십니다. 예컨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업으로 얘기하면 총당금에 해당하는 총당부채에 대한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부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로 부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분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재정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주광덕 위원 지난 1년 동안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서 복지 확대 지출구조를 좀 더 잘 절약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만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모순이 해결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일반론에 있어서.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지출 확대를 보통 한 3.5% 내외 정도 해 왔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지출 확대 정책으로, 지금 한 7.2%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도가 7.1%입니다.

○주광덕 위원 금년에는 새 정부 들어서 첫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7.1%의 지출 확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 7% 내외의 지출 확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만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지출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3.5% 내외 그 정도로 될 것인지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오늘 저희가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5년 동안의 중기국가재정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5년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전체 예산 증가율, 저희는 총지출 증가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쉽게 예산 증가율을 저희가 5.8%로……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5년 평균이 5.8%?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5.8%를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7.1%로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아마 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보통 저희가 확대 재정이라고 하면 경상성장보다 높게 예산을 늘리면 확대 재정이라고 하거든요.

○주광덕 위원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숫자는 5년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상성장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지출하겠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저희가 경제와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또는 길게 봐서 긴 기간 동안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고요.

다만 아까 오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지금 -1.7입니다마는 5년 뒤에 저희가 한 2.1~2.2% 정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이 39.7%입니다만 5년 뒤에는 40~41% 사이 정도로 관리하면서 총지출을 늘려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은 40% 미만이지 않습니까, 삼십구점몇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39.7%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광덕 위원 크게 오버되지 않을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부총리 얘기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적신호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나중에 1년 지나서 이 자리에서 또 답변을 하셔도 일관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저희가 1년씩 롤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적에 5년 동안 이렇게 짚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내년부터 시작하는 롤링 계획을 짜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조로는 제가 말씀드린 기조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어쨌든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도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첨언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그 돈을 어디다가 제대로 써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산성을 올리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물론이지요.

.....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내각을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국무위원 또는 장관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균형추 역할을 잘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는 본인이 아마 잘 챙기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의 업계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최저임금 16.4% 올랐지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각종 세무조사니 뭐니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돌지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단축 있지요, 또 전기요금도 앞으로—뭐 5년 동안은 안 올린다 하니까 그것 믿고—5년 후에는 또 올라간다, 사실은 또 법인세도 지금 올린다,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성노조는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그러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서 기업 해야 되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 많습시다. 매출 1조 되는 중견기업도 차라리 요즘 중국에 있는 공장에 라인 몇 개 더 옮겨서 거기서 생산해서 국내로 가져오면 각종 규제에 안 걸리고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경영에 부담되는 조치들 다 회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부총리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걱정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관리할 만한 수준에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소가 안 크고 소가 말라비틀어지는데 어떻게 받을 갈고 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최근에 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너무 과격하고 빠르고—특히 탈원전 다 마찬가지로—그래서 부총리가 내각에서 중심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도 법사위에서 계속 기회 되면 의논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윤 위원님 지적과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중심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 사이드에서의 정책들인데 경제 운영에서 공급 사이드에서의 혁신성장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2개가 다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반에 수요 사이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덜

부각된 점이 있는데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균형 잡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박지원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셔서 광주·전남에 인사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라북도는 그러하지 못해서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호남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인사 폭탄 굉장히 좋아서 지지를 많이 하지만 광주·전남에 떨어진 인사 폭탄은 전부 죄지은 사람한테 덕이 갈 그런 인사이지 경제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폭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간헐적으로 들은 바에 의거하면 SOC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버렸지요.

부총리,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구조조정을 SOC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사실 호남에 가장 필요한 것은 SOC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은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고 모든 것으로 갈 수 있지만 호남은 근본적으로 철도 도로 교량 항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발전, 심지어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면서 호남의 발전은 또 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다.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관례나 경험을 보면 국회에서 증액되더라도 정부에서 대개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호남의 특수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죄지은 사람한테 필요한 그러한 인사 폭탄보다는……

부총리께서 잘 아시잖아요. SOC에 대한 예산 폭탄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SOC 예산을 좀 감안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이 4조 4000억 정도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 SOC 예산이 지역 경제와 지역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의 SOC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못 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한 2조 6000억 정도 되고요—이것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그다음에 금년도에 공사 완료분이 한 1조 4000억 정도 돼서 합치면 4조 정도의 소요를 커버할 수 있는 룬은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 경제나 고용에 영향이 있다면 SOC 쪽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행정부 내에서 전체 규모의 2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들에 선투자를 좀 유도해서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SOC 쪽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균형과 발전에서도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에서도 이번에 기준을 좀 바꾼다든지 죽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뭐 꼭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다가 보다는 좀 낙후된 지역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SOC 예산은 호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SOC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경에서 경감까지 그리고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각각 근속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으로 단축하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경찰이 하위직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순경이 9급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장 권성동** 9급 말단으로 들어가서 사무관에 해당되는 경정까지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찰청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 이철성** 실질적으로 지금 경정의 숫자가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 12만 경찰로 보게 되면 한 이점……

○**위원장 권성동** 6.7%?

○**경찰청장 이철성** 예.

○**위원장 권성동** 일반직 공무원이 한 30% 되거든요. 근속기간 단축도 중요한데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 근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그다음에 아무 대과 없이 근무하면 사무관은 달고 나가야 본인도 조직에서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또 가족들 보기도 좀 따뜻한 그런 가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속기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무관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철성**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속 승진 연한 단축과 함께 또 향후에 직급체제 개선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이철성 경찰청장님, 우재봉 소방청차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탄핵 때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그때 당시에 ‘계엄령 선포하라’든가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종이를 배포했다고 내란선동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요?

○**경찰청장 이철성** 예, 그 부분은 올 1월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이 검찰로 왔습니다. 검찰에서 3월 말경에 경찰에 일단은 이첩 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합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내란죄는 보통 어떻게……

내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경찰청장 이철성** 최근에 내란죄 관련 판례는 이석기 통진당 사태가 있었고요 과거에 노태우·전두환 전직 대통령 그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런 식으로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인 요건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검찰에서는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죄명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신중히 잘 살펴보고 균형감 있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니다.

○정갑윤 위원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청와대로 진격해 박근혜를 끌어내자고 한 단체도 있지요? 어쩌면 국민에게 오히려 더 위협을 주고 한 발언이고 행위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편파적인 수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집행하시는 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균형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보수나 진보 또는 단체 성격과 무관하게 균형 잡힌 수사,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입니다.

○조응천 위원 아, 행안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조응천 위원 하도 바뀌어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제 소속 기관입니다.

○조응천 위원 송기호 변호사라는 분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위안부협정 타결 관련하고 또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문건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국가기록원이 아직도 이렇게 소극적인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기로는 ‘이게 지정기록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관한다. 이관해서 공개할 거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된 것은 ‘국가기록원, 청와대 위안부·세월호 문건 최종 비공개 처분’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뭐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새로운 파일이 발견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가서 제가 조사를 해서 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아마 이분이 또 법원에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 ‘이 정부도 자꾸 감추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청와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문건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내용에만 따르다 본다면 이번에 공개하기 전에 상당 기간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산하에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여러 가지 법률 검토 결과를 본다면, 미이관된 서류의 존재가 법률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차제에 청와대에 추가적인 다른 문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작업들을 청와대에만 맡겨 놓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제2부속실이라는 그 직위가 2015년도에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되던 파일이니까 그 뒤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청와대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험들링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그게 되면 그 판단 자체를 즉시 이관하도록 요청하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발견될 경우에 즉시 이관은 당연

하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지요. 미이관된 서류들의 존재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한번 청와대 내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추가적인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런데 그게 전부 우연히 발견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청와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박지원 위원** 내가 하나 거기다 첨가해서……

○**위원장 권성동** 예,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내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지금 보면 말이지요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문건,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다 치우고 나왔……

어제 공유한 그 파일도 발견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들어보면 누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치웠는데 그 서류를 다시 청와대에다 갖다 놓고 이제 발견된 것처럼 과거 정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관계 장관으로서 정부 기록물을 망기한 책임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기요?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 기록물은 그 정권이 끝났으면 이관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관시키지 않은 책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게 지난번……

정상적이었으면 퇴임하시는 대통령이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이관함으로써 그 업무가 다 끝이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간에 그렇게 빠진 기록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것은 지정기록물은 될 수 없는 거고요, 이미 다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권은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우리가 집에서 이사를 가건 내가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건 자기 책상 치우고 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을 안 치우고 갔는데 ‘나는 치우고 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발견한 사람들은 ‘있더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치우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사해서 좀 해야지 전부 다 지금은 현 정부에서 과거 정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어제 발견된 것은 이후……

○**박지원 위원** 아니, 어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물들이 무슨 캐비닛에서 나왔다, 누구 책상에서 나왔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앞으로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절차상 생각하지 못했던 입법 미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임하는 대통령께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문건이나 다른 게 발견이 됐을 때, 전자문서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입법을 해 주시면 명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중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전 환경노동위원장님께서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셔서 법사위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동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법사 위원님들께서 김영주 장관님께서 어느 정도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 정부에서는 산업부장관이라서 지금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참 걱정 많이 하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관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속사정은 잘 아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도 노조 출신이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노총 출신이고, 지금 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강성노조들은 노동친화적인 정부하에서…… 빗 청구서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어느 한곳에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우리 산업현장이 돌아간다는 느낌 안 듭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 지금 현대자동차 파업 있잖아요, 정말 이것은 강성 기조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여 가지고 국내 임금 보전해 주고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임금 올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망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노조가 좀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노조, 이제는 한발 좀 물러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노동현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최저임금에다가 또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기세등등한 청구서 날려 보내는 노조들…… 이래 가지고 우리 산업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관에 임명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을 했고 직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그런 경험을 대통령께서 전부 인정해서 저를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경력 10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행정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 방문했을 때 제가 민주노총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동계 출신이라도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에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또 얼마 전에 STX 산재사고로 4명이 사망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복합 사업장이었습니다. 혼재된 사업장은 원청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X 사장더러 ‘이 부분은 원청에 책임 있다’ 해서 바로 원청이 나서서 일주일 만에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많이 어려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 잡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금방 이게 중요한 사항이어서요.

○**위원장 권성동** 예, 시간 1분 더 주세요.

○**윤상직 위원** 지금 통상임금 있잖아요, 정말 지난 정부에서도 해결하려다가 법원의 판단이 계

속 미루어지면서 이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텐데 이것 잘못하면 우리 산업 현장 그냥 망합니다.

지금 191건 정도의 추가적인 통상임금 소송이 있지요, 진행되는 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윤상직 위원** 지금 붓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한 말씀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산업현장 망하고 나면 우리 노조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통상임금은 그간 노사가 합의해서 이미 상여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게 퇴직금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통상임금이 또 산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해서 입법을 해 주시면 될 거고, 8월 31일 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전에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얘기하면 너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려 주시라는 거지.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 업무가 노조로부터도 욕먹고 산업계로부터도 욕먹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는 야간·휴일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전에 박근혜정부 때, 민주당에서는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25%이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도 25%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 이 정권에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것을 자꾸만 하게 되

면 우리 글로벌 시대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다가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하고 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그리고 52시간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행정 해석으로 지금 68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이고 선진국가인데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최장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해 봐도 요즘에 아주 일반 산업을 제외하고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52시간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8시간 부분, 그 부분도 100% 할증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50% 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법안을 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는 결국은 산업현장을 붕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지금 최저임금도 인상됐는데 그것까지 100% 인상한다고 그러면 정말 영세·중소기업은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해외로 내몰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와 노동자를 편드는 것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뭐가 산업도 살리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윈윈전략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중희·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홍문중·이종배·김도읍·성일중·김현아·김정재·이은권·정갑윤·문진국 의원 발의)
1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2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욱·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중·강효상 의원 발의)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발의)
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

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7항, 제25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현행 기초연금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금융정보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에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형벌 부과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직접 제한하여 규정하는 한편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로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7항 약사법에 관해서 식약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김진태 위원 이 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검토 단계에서 다시 수정이 됐는데요, 그 수정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김진태 위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상반응, ‘임상시험 등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범죄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반응하고 부작용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조금 다릅니다. 이상반응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위원장 권성동 마이크를 대고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상반응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부작용은 장기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

○정갑윤 위원 마이크를 당기세요.

○김진태 위원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상반응은 일시적이고 부작용은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언적인 의미하고 해석이 학문적으로까지 어떻게 되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상반응에 관한 것만 허위 작성되는 것을 처벌하고 어떤 약의 효과에 관해서는 허위 작성해도 괜찮은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둘 다 허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이상반응 말고 효과에 관해서만 허위 작성한 것도 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 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임상시험 관련 기록은 그 결과를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하고는 좀 사항이 달라서 이것은 벌칙을 조금 낮게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효과에 관해서는 지금 이 조항에서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김진태 위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임상시험 성적서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성적서 발급 위반은 이미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상 성적 올리는 기록, 임상시험을 하면서 잘못 기록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그 성적까지는 가지 않지만 신약에 대해서 어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기록, 그런 기록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기록을 거짓 작성할 때 행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이 조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감기약이 열을 내리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 작성했을 때 이 새로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것은 임상서 거짓 작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임상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임상서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치라든지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질의는 그 정도 마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단계에서도 불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다 넣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자신이 안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문서 허위 작성을 막 처벌하겠다는 건데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행정형벌에 가까운 그런 것을 굉장히 과감하게 형사법의 범위 내에 넣겠다는 거라서 이것은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제8항, 제10항부터 제16항, 제18항부터 제24항, 제26항·제27항·제2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요새 마스크 언론을 많이 타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두 분 출석해 계십니다.

두 부처의 업무와 관련돼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 법 35조에 보면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까지 보면 위탁운영 방식으로 고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긴 했지만 원래 이 규정 취지가 그런 식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실상부한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설계비 3.8억과 건립비 20억 원을 반영하려

고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는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오히려 전 정부 때보다 훨씬 후퇴된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위탁운명을 한 것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해 왔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으로 만든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면밀히 봐서 가능한 그 부분은 독립된 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가 최근 5년간 5790명에 이릅니다. 하루에 3.2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장기기증 등록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2.5%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낮다든지 또는 부정적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1분만 더 주세요.

○박주민 위원 부정적이라든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인식조사를 보니까 1000명 중에 413명이 장기기증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등록률은 왜 이렇게 낮은가 봤더니 등록하지 않은 사람 43.7% 정도가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또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해서 등록을 못 했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운전면허시험을 본다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많은 성인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표현하

고, 그것이 관리되면서 장기기증 등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 쪽에서는 좋은 취지이나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 권성동 1분 더 드려요.

○박주민 위원 보건복지부 쪽에서의 어떤 협조나 도움이 있다면 자기네들도 해 볼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장기기증이 안 돼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또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장기이식과 장기기증이 좀 복잡한 절차로 되었던 것은 과거에 장기매매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끊을 때 미리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그런 서구의 방식을 우리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 중이고, 그래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장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박지원 위원 답변을 해야 속기록에 나오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박지원 위원 그렇게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국회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박지원 위원 이제 장관 되셨단 말이에요. 장기기증에 대해서 보건행정 일선에 안 있었지만 저 정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으로서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열심히 습득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열심히 하는 연습장이 아니예요. 오늘 아침에 달걀 몇 개 잡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오늘 아침 식사 못 하고 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하루에 267개씩 계란 먹는 사람 있어요? 태아, 애들이 계란 2개씩 먹어요?

그게 자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살충제 달걀 어떻게 되어 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시중에 있는, 8월 14일 이후에 저희들이 450만 개를 회수하고 또 반품 농가에서 250만 개 해서 약 700만 개를 회수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 7월 1일 기준으로 45일간 유효기간으로 치면 약 18%, 그래서 한 7일분 정도 시중에, 하루 한 100만 개 정도가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달걀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달걀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박지원 위원** 틀림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박지원 위원** 얼마나 소비가 저하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까 농축산부장관님하고 의논했는데 지금 한 80%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생리대는 또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생리대는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898개 품목을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해평가 및 VOC 검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달걀을 먹고, 또 달걀 생산자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세요? 보험에다 맡기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것은 정부에서, 식약처 소관은 아니고 농축산부에서 방침이 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권성동** 1분 더 드려요.

○**박지원 위원** 여성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환불 조치하는 것이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4% 정도 정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50%는 어디에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생리대요?

○**박지원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생리대는 지금, 문제가 됐던 생리대는 그 회사에서 전량, 날개라도 다 환불 조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식약처장 자리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처장 개인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님, 이어서 저도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은 총리로부터 짜증 안 받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제가 부덕한 소치로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진태 위원** 살충제는 또 왜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금방 밝혀질 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살충제는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살충제 계란은 저희들이 다 수거를 했고 혹시 그전에,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드실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해도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안전하다 하고 발표한 것이……

○**김진태 위원** 아이고,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법사위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을 해서 계란에 살충제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

준치를 수십 배 넘는 그게 나왔으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무슨 정치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진태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잘 그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그것 말고도 물어볼 게 많아요.

요새도 SNS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안 합니다.

○**김진태 위원** 요새는 안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것 정도가 좀 심하더라고요요,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SNS 이것을 아주 즐겨하는 모양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뭘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된 이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지금 다, 이 정부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들관에서 마음껏 사시던 분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준비도 안 됐고.

이 SNS에 올린 것을 차마 법사위에서 읽어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박지원 위원님 말씀따라나 원래 계시던 데로 가서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하고 그렇게 사실 용의는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부덕한 저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 질타를 받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식약처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식약처를 잘 이끌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식약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이용주 위원** 식약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님 대기하고 계신데 방에 가 계셨다가, 이것 끝나고 잠시 정회할 테니까 벌서지 마시고 가서 편히 계시다 오십시오.

○**이용주 위원** 식약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산 소시지·햄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이용주 위원** 주로 문제되는 제품의 수입처가, 수입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고는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유럽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약 7만t 정도 됩니다. 87%는 가열성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 한 13% 정도가 비가열성이라서 E형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로 수입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주로 스페인·네덜란드·독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로 독일·네덜란드에서 1년에 저희들이 수입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이용주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돼지고기는 약 44만 3000t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 식육가공품이 약 6800t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소시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소시지요?

○**이용주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소시지는 식육가공품인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덴마크·스페인·이탈리아에서 약 6800t이 수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독일산이 얼마나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육가공품은 독일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소시지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이거 나오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본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이용주 위원 6800t도 아닌 것이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유통·판매가 중단이 됐습니까, 중단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비가열 부분은 지금 유통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유럽산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어떤 브랜드인지 공개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브랜드별로는 다 알 수 없고 하여튼 수입되는 유럽산 비가열 부분은 지금 있는 것 다 스톱시켜 놓고 검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안절부절 못하시는데 답변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품이라는 것은 보건의, 국민들이 매일매일 먹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안전하다 하면 안전한 것으로 믿고 합니다. 왜?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안전조치, 안전한 식품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사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식약처장에게 있는 겁니다.

국회에 오실 때에는 기본적인 자료·내용 파악하고 오세요. 파악 못 하시면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오신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식품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식약처에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오신환 위원 그래서 어떤 분야보다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또 지금과 같은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장님 임명됨과 동시에 살균제 달걀 그리고 발암 생리대 문제 그리고 지금 막 지적한 간암 바이러스 소시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질타를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다가 ‘국회에서 하도 불리 대가지고 대응하는 데 업무가 마비가 와서 못 할 지경이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발언은,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14일 날 저녁에, 15일 날 살균제 계란이 터졌는데 차장님도 없고 평가원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6일은 현장 지휘해야 되는데 16일 날 보건복지위에서 부르고 또 17일 날 해수위에서 불려서 저희 식약처에서 현장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 하는 그런 점을……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 일간지에다가 연일 국회에서 불리 대서 업무가 마비가 와서 대응할 수가 없을 정도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타이틀이 좀……

○오신환 위원 지금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나왔어요,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타이틀이 좀 그렇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오신환 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부족하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오신환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오늘 건강보험 관련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발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발표한 게 아니

라 건정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30조 6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에서 10조 원을 쓰고 국고 지원 확대 한 6.9조 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2.2% 정도 5년 동안 상향하게 되면 30조 6000억 원이 가능한 겁니까, 판단하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재정 추계를 할 때, 30조 6000억이라는 비용 증가분을 추계를 해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대략 3%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4% 인상된 것으로, 조금 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 수준이면 30조 6000억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 위원 소위 말하는 적립금이라는 게 사실은 법정준비금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그게 100분의 50% 적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출금액이 53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26조가 원래 법정준비금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법정적립금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이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거기에 다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립금의 상한액이 1년 지출액의 50%니까 50%를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적립금을 문재인 정부가 10조를 그냥 5년 내에 쓰겠다고 향후 정부에서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적립해 놓은 것도 아닌데, 5년 내에 이 대한민국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조를 갖다

쓰면 다음 정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세대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적립금이라기보다는 준비금인데, 준비금은…… 건강보험은 단기성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지출하는 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지출할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단기성보험이라 그러지 못해서……

○오신환 위원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예측하기에는 올해 연말부터 벌써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더 많은 지출이 확대될 텐데, 그런 것들을 준비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미연에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쓸 때 필요한 돈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이미 지출에다가 다 쓰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모자라게 되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준비금이며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조가 쌓여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음 세대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지만……

○오신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예.

두 분, 박능후 장관, 류영진 식약처장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감사합니다.
 ○윤상직 위원 두 분 다, 우리 고향 후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한편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리 장관한테는 나중에 질문드리고요.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윤상직 위원 지금 제 머릿속에 뭔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요. 지난 정부에서 우리 고향 부산에서 참 많은 장관들이 나오셨는데, 윤 모 해수부 장관님 같은 그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씀과 행동이 비슷해요.

엇그저께 평택의 국제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윤상직 위원 어떤 이야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윤상직 위원 말씀해 보시라고요.

무슨 대형사고 터지려고 그러면 그전에 뭔가 사고의 징후 또 여러 가지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처장 취임하고 나서 살충제, 생리대, 소시지 연속으로 터지거든요. 대란을 예고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가 생깁니다.

특히 식약처장의 SNS하고 또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공직이라는 데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직은 SNS 잘해 가지고, 그래서 공 세워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공직생활 34년 했습니다. 어떻게 처장을 밟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 입을 거리 이런 것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왜 발표하면서 말이지요, 성인남자가 126개의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 생체 실험합니까? 이 정부가 생체 실험 정책을 하느냐고요. 그런 표현 가려서 하세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세요.
 ○윤상직 위원 예.

박 장관 말이지요, 정권은, 이 정부는 5년 갑니다. 그런데 국가는 백년, 천년을 갑니다. 복지부 장관 자리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제 몇 대 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만 남아요. 아마 복

지부 대회의실에 가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나라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과거의 선배 공무원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것 잘 염두에 두시고요. 나라 살림을 잘 챙겨 주시고, 최근의 복지예산이 바로 나라 살림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상직 위원 챙겨 주시고요.

지금 이 정부는 정말 운이 대박으로 터진 그런 정부입니다. 수출 안 되다가 10몇 프로씩 확 좋아지고 있지요. 세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지요. 총당금, 준비금 많이 모아놨지요. 그것 다 털어 쓰고 '나는 잘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 몇 대 복지부 장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53대입니다.

○윤상직 위원 남은 것은 53대 복지부 장관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복지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국회 오는 날은 잠도 안 오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정성호 위원 그러실 겁니다, 사실은. 국회 오면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고깝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 그 자리의 엄중함, 그 무거움을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허용하지 않아요. 국민의 건강 또 생명 그것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장님께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전문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밑에 다른 부하직원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처장께서는 정무적인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구실 찾고 이유 찾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이게 우리 처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 갖고 국민의 건강, 생명, 먹거리 이런 걸 책임지는 처장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 약간의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또 당황하셨겠지요, 갑자기 대형사건 터지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하니깐. 지금까지는 본인이 상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변명과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정성호 위원** 정말 밤 새워서 공부하고 지금 국민들이 뭘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국회에 오실 때는 늘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식품과 의약품 관계된 모든 걸 처장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운상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하인리히 법칙이 1 대 29 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외판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조사한 건데 대형사건 하나 터진다고 하면 중간 정도의 사건이 한 29개 정도 터지고 작은 징후적인 사건들이 한 300건 터진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사건 터졌을 때 ‘이 원인이 전 정권에 있었다’ 이렇게 돌려대면 안 돼요, 사실은요. 사건 터지면 이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조사한 계란이’ ‘살충제가 전 정권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 통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처장이나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심기일전해 갖고, 끝이어서 정기국회 오고 국정감사 그리고 또 법안심사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국민

들이 ‘우리 장관이나 처장한테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정부의 발표를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각오를 한번 단호하게 밝혀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님들 오늘 지적 마음에 새겨서 식약처 전 직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약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장 권성동** 다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료 중에 지금 류영진 처장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또 무능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장 한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식약처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인상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업무에 충실한데 처장이 그것을 자기 그릇으로 잘 담아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식약처 공무원들도 무능하고 실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만큼 수장의 이미지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사투리부터 고치세요. ‘뭐라고예’ ‘잠깐만예’ 이것을 ‘잠깐만요’로 하시든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든가 해야지 사투리부터 쓰면서 하니깐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우리 식약처의 위상과 직결돼 있다, 나로 인해서 식약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금태섭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금태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태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12%가 맞습

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리고 2016년도 한 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47.4조 원, 47조 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얼마 전에 토론회에 나온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을 보니까 ‘3년간 보험료를 약 3% 인상할 경우에 약 26조 원의 추가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지출관리만 동반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그 3% 인상하겠다는 게 지금 6.12%인 보험료율의 3%를 인상하면 한 6.3%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금태섭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렇게 지금 6.12%에서 3% 늘리는 것만 가지고 26조 원이 확보가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매년 평균상승률을 3%p로 잡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위원 매년 3%씩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금태섭 위원 2012년에 5.8%였는데 2017년에 6.12%니까 5년간 5.5%가 인상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금태섭 위원 그러면 3%라는 것은 3년간 9% 인상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년간을 치면, 단순집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평균이니까 쉽게 말하면 조화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평균이 아니라. 5년치 평균을 다 내서 나누기 루트 5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평균 3% 정도가 되지요.

○금태섭 위원 3년간 3%를 인상하면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이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6.12%인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7% 내외?

○금태섭 위원 7% 내외?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고유법을 심사할 순서인데요.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4시에 장관님들 자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욱·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3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이동섭·채이배·김경진·김동철·오세정·김삼화·김수민·김광수·장정숙 의원 발의)

3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찬대·정성호·홍의락·추혜선·민병두·김해영·홍익표·김종훈·박영선·박경미·김영주·박광은·강병원·이춘석·유동수·권미혁·인재근·박남춘·정동영·최인호 의원 발의)

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김영주·강창일·황주홍·김관영·민병두·김종민·박남춘·이찬열·안규백·박주민 의원 발의)

3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김병욱·김해영·신경민·이종걸·김관영·안규백 의원 발의)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신경민·박남춘·조승래·정재호·설훈·기동민·김상희·신창현·민병두·김영호·우원식·문미옥·김종민·제윤경·송옥주·이훈·박찬대·고

- 용진·김철민·황희·송영길·박경미·유승희 의원 발의)
3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3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천정배·이동섭·김광수·송기석·최경환(국)·김수민·윤영일·장정숙·이용호·정동영·김중로·김성식·강창일·김정우·김종훈·김종희·김경진·윤관석·박주현·정인화·조배숙·오세정·최도자·심재권·유성엽 의원 발의)
37.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38.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호·백혜련·안규백·박주민·김성수·윤관석·박찬대·박남춘·이찬열·김부겸·황주홍·박용진 의원 발의)
3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황주홍·김종희·이용호·김중로·김삼화·유성엽·박주현·박선숙·정인화·박준영·윤소하·이용주·김경진 의원 발의)
4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박정·이재정·김혜영·송기현·김한정·문미옥·박완주·윤후덕·기동민·오영훈·이춘석·윤호중·박범계·안호영·이훈·김병욱·금태섭·조응천 의원 발의)
4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범계·금태
- 섭·백혜련·정성호·조응천·김두관·안호영·김현권·김철민·강훈식·윤관석·안민석·송기현·제윤경·최인호·이훈·권칠승·송영길·우원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박재호·임종성·소병훈·송옥주·조정식·유은혜·김태년·김성수·손혜원·박정·박경미·김영호·윤후덕·조승래·이원욱·이춘석·한정애·김한정·정춘숙·김상희·박찬대·박남춘·이석현·박영선·백재현·어기구·전해철·정재호·전혜숙·권미혁·설훈·기동민·이철희·김병관·문미옥·강병원·박광운 의원 발의)
4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칠승·김병욱·김영주·김혜영·박광운·박재호·박찬대·백재현·우원식·위성곤·유동수·이재정·이춘석·전재수·최인호 의원 발의)
4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강석호·김도읍·金成泰·김명연·이양수·김현아·권석창·김정재·박인숙·이우현·박찬우·이은권·윤상현 의원 발의)
4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욱·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중·강효상 의원 발의)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윤한홍·함진규·박명재·유기준·김정재·주호영·유민봉·윤후덕·이현재 의원 발의)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강창일·조승래·홍문표·박영선·도종환·이원욱·유은혜·노웅래·김영주·김영춘 의원 발의)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경대수·이종명·박순자·김종대·전혜숙·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장제원 의원 발의)

- 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황주홍 · 남인순 · 김중로 · 박선숙 · 이용호 · 정인화 · 김수민 · 김관영 · 박지원 · 박주선 · 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74)
- 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황주홍 · 남인순 · 이용호 · 정인화 · 김수민 · 신용현 · 김관영 · 박지원 · 이용주 · 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3)
-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이우현 · 유민봉 · 최연혜 · 이명수 · 정태욱 · 권석창 · 홍철호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 5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희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고용진 의원 발의)
- 52.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박남춘 · 우원식 · 윤관석 · 신경민 · 안민석 · 이춘석 · 김경협 · 노웅래 · 김상희 · 조승래 의원 발의)
- 5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희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박주민 의원 발의)
- 5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균현 의원 발의)
- 5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 · 추경호 · 김정재 · 이현재 · 김광립 · 조경태 · 엄용수 · 곽상도 · 정중섭 · 김진태 · 이완영 · 김태흠 · 민경욱 · 이만희 의원 발의)
- 5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성일중 · 이태규 · 金成泰 · 정용기 · 김석기 · 김중석 · 조훈현 · 문진국 · 김승희 · 윤재욱 · 안상수 의원 발의)
- 5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여상규 · 김영우 · 김재경 · 김성태 · 이종구 ·

- 주호영 · 이진복 · 하태경 · 장제원 · 정양석 · 박인숙 · 이균현 의원 발의)
-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
- 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박덕흠 · 김석기 · 이완영 · 장석춘 · 金成泰 · 조경태 · 문진국 · 이명수 · 전희경 의원 발의)
- 6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기동민 · 김정우 · 소병훈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인재근 · 장정숙 · 최명길 의원 발의)
- 6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안규백 · 송영길 · 신창현 · 정성호 · 박홍근 · 김철민 · 윤후덕 · 서영교 · 이해찬 · 송옥주 · 박정 · 김성수 · 변재일 · 황희 의원 발의)
- 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86)
- 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권철승 · 신경민 · 김정우 · 이춘석 · 김해영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8)
-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박정 · 신용현 · 이동섭 · 김영춘 · 최도자 · 추혜선 · 이해찬 · 박주선 · 장병완 · 손금주 의원 발의)
-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기동민 · 김정우 · 소병훈 · 이원욱 · 이재정 · 인재근 · 장정숙 · 최명길 · 황희 의원 발의)
-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강석호 · 金成泰 · 김명연 · 이양수 · 김현아 · 권석창 · 김정재 · 박인숙 · 이우현 · 박찬우 · 이은권 · 윤상현 의원 발의)

- 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문미옥 · 윤소하 · 진선미 · 김성수 · 박광온 · 도종환 · 이원욱 · 박홍근 · 이춘석 · 김현미 · 윤호중 의원 발의)
- 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추미애 · 김해영 · 박홍근 · 안규백 · 이채익 · 김병관 · 신동근 · 박광온 · 윤호중 · 이원욱 · 손혜원 · 설훈 의원 발의)
- 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중희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박주민 의원 발의)
- 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조정식 · 이찬열 · 윤관석 · 문미옥 · 이춘석 · 도종환 · 안민석 · 제윤경 · 박광온 · 송영길 의원 발의)
- 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안규백 · 최인호 · 박광온 · 우원식 · 황주홍 · 홍익표 · 권미혁 · 조응천 · 박용진 · 정성호 · 이춘석 · 박범계 · 박경미 · 박남춘 · 박정 의원 발의)
- 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윤관석 · 최도자 · 김병욱 · 이춘석 · 박성중 · 이원욱 · 정춘숙 · 고용진 · 김영진 · 기동민 · 인재근 · 민병두 의원 발의)
- 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박정 · 박경미 · 우원식 · 박재호 · 김영호 · 임종성 · 박찬대 · 강창일 · 윤관석 · 손혜원 · 김철민 · 김영춘 · 이해찬 · 박남춘 의원 발의)
-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황주홍 · 소병훈 · 노웅래 · 박홍근 · 정성호 · 김성수 · 김정우 · 황희 · 박남춘 · 김영춘 · 박경미 의원 발의)
- 7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정인화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이개호 · 황주홍 · 민홍철 · 김철민 · 서영교 · 박재호 · 김수민 · 전재수 · 김경수 · 김중희 · 박남춘 · 서형수 의원 발의)
-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욱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종 · 강효상 의원 발의)
-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정미 · 오제세 · 조배숙 · 소병훈 · 조정식 · 윤관석 · 박홍근 · 노웅래 · 이원욱 · 이용득 · 이개호 · 서영교 · 박정 · 김상희 · 박찬대 · 김영춘 의원 발의)
- 78.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김경진 · 김관영 · 김동철 · 박선숙 · 박지원 · 송기석 · 신용현 · 윤영일 · 정동영 · 조배숙 의원 발의)
- 8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이동섭 · 채이배 · 김경진 · 김동철 · 오세정 · 김삼화 · 김수민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 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김영호 · 한정애 · 김정우 · 조배숙 · 신창현 · 이철희 · 김영춘 · 인재근 · 이종걸 · 김철민 의원 발의)
- 8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조정식 · 이찬열 · 윤관석 · 문미옥 · 이춘석 · 도종환 · 안민석 · 제윤경 · 박광온 · 송영길 의원 발의)
-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박남춘 · 남인순 · 신창현 · 신경민 · 김병관 · 양승조 · 조승래 · 정재호 · 설훈 · 기동민 · 김상희 · 민병두 · 김영호 · 우원식 · 문미옥 · 김종민 · 제윤경 · 송옥주 · 이훈 · 박찬대 · 고용진 · 김철민 · 황희 · 송영길 · 유승희 의원 발의)
-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박영선 · 이원욱 · 조승래 · 손혜원 · 박주민 · 김병관 · 박용진 · 서영교 · 진선미 · 김성수 · 표창원 의원 발의)
-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 · 경대수 · 김재경 · 이주영 · 오신환 · 정운천 · 이채익 · 정갑윤 · 이은재 · 홍일표 의원 발의)
-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정인화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민홍철 · 이개호 · 황주홍 · 김철민 · 서영교 · 박재호 · 김수민 · 전재수 · 김경수 · 김중희 · 박남춘 · 서형수 의원 발의)

8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원욱·서영교·김해영·유동수·김중훈·김상희·추혜선·노희찬·황희·인재근 의원 발의)
8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윤후덕·조정식·김경협·김병욱·최인호·소병훈·송석준·양승조·이춘석·전현희 의원 발의)
9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윤소하·표창원·김정우·전혜숙·원혜영·남인순·윤관석·김영진 의원 발의)
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서영교·장정숙·임종성·정재호·인재근·박주민·김상희·송기현 의원 발의)
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정재호·신창현·안규백·이종걸·윤관석·김철민·남인순·인재근·박정·황주홍 의원 발의)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신경민·김영주·전혜숙·정춘숙·강창일·이종걸·서영교·윤영일·이훈 의원 발의)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 의원 발의)
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진선미·송옥주·문미옥·우원식·김정우·김현권·권미혁·김현미 의원 발의)
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상희·이찬열·안규백·박정·박주민·박용진·고용진·이종걸·어기구 의원 발의)
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정태옥·채이배·정갑윤·윤상현·김도읍·이은권·박맹우·박명재·김종태 의원 발의)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변재일·안규백·서영교·장정숙·임종성·정재호·인재근·박주민·김상희·송기현 의원 발의)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위성곤·박찬대·남인순·최운열·어기구·이철희·김철민·정춘숙·최인호·이훈·박정·조응천·권미혁·정재호·전혜숙·기동민·이원욱 의원 발의)
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김경협·윤호중·변재일·최인호·신경민·이훈·김영주·김두관·박용진·고용진·김병관·안호영 의원 발의)
10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이원욱·이재정·전혜숙·고용진·김영진·이춘석·표창원·기동민·손혜원 의원 발의)
10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배덕광·윤상현·조경태·민경욱·이현승·김석기·김성찬·곽대훈·이종명·김성원·염동열·박덕흠 의원 발의)
1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미혁·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용진·박정·안규백·우원식·이춘석·정성호·조응천·최인호·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
1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상희·임종성·서영교·윤후덕·박찬대·강창일·오영훈·위성곤·전재수·문미옥·민병두·조정식·소병훈·송기현·도종환 의원 발의)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윤관석·최도자·김병욱·이춘석·박성중·이원욱·정춘숙·고용진·김영진·기동민·인재근·민병두 의원 발의)

- 1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박덕흠·김기선·곽대훈·강석진·지상욱·김석기·이채익·이명수 의원 발의)
- 10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중회·김중로·오세정·장병완·장정숙·정동영 의원 발의)
- 1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노웅래·강창일·김현권·위성곤·황주홍·홍익표·김철민·김정우·박정 의원 발의)
- 11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소병훈·김현권·윤후덕·이원욱·김영진·유동수·박찬대·이개호·위성곤·김병기·신창현·김한정·송기현·박정·황희·기동민·백재현·유승희·임종성·노웅래 의원 발의)
- 112.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관영·오세정·조배숙·정인화·장정숙·주승용·남인순·소병훈·김광수 의원 발의)
- 113.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영선·이원욱·조승래·손혜원·박주민·김병관·박용진·서영교·진선미·김성수·표창원 의원 발의)
- 1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이동섭·김중회·윤영일·박준영·장정숙·오세정·서영교 의원 발의)
- 1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철민·윤후덕·김정우·오제세·윤관석·박홍근·정동영·이개호·신경민·조정식 의원 발의)
-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주현·주승용·정동영·이용호·김중회·윤소하·정인화·유성엽·이동섭·정유섭·도중환 의원 발의)
-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해영·우원식·이

준석·박찬대·김병욱·백재현·최인호·권칠승·이재정·김영주·위성곤·전재수·박재호·유동수·박광운·송영길 의원 발의)

-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남인순·신창현·박경미·신경민·김병관·조승래·정재호·설훈·기동민·김상희·김영호·우원식·문미옥·김종민·제윤경·송옥주·이훈·박찬대·고용진·김철민·황희·송영길·유승희 의원 발의)

-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기선·김순례·문진국·박덕흠·서청원·송석준·송희경·이우현·이종명·정용기 의원 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9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9항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금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 제103항, 제107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의원**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판결문을 공

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의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고 검색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처럼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가야 하고 그나마 검색대는 네 곳이고 열람만 가능할 뿐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을 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판결에 관여한 법관 및 변호사의 이름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고된 판결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후견개시 등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전속관할 역시 후견개시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주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후견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 가정법원의 감독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또 후견인이 감독법원을 임의로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법원의 연속성 있는 감독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법원이 변경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독일 등은 관할항정의 원칙에 따라 성년

후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한 법원에서 감독사건 전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견개시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어보니 일견 법안 내용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8항·90항·91항 등 정부에서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부칙의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등기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등 등기 관련 세입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 등기소 광역화를 통한 등기 선진화 작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피부착자의 수신자료 및 신상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부착명령 기각 시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촉탁인

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증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증사무 소개·알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29항부터 7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36항까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 중 31항 백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대검찰청 및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률안 등이 심의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박주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검찰국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한편 범죄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과 직접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검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는 검사의 법무부 겸임 금지는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나 법령 제·개정 및 국가송무 등 검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5항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제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 이상의 퇴직자는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 검사 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서는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제시된 법무부의 의견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수사개시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 검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중립성이 있는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위원회의 소속과 심의 대상, 위원 구성의 방식 및 심의 절차 등은 검찰위원회의 기능과 민주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8항 민병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특별법안은 권력을 이용하여 취득한 부정수익을 소급적으로 국고에 귀속시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국헌문란등행위’ 등과 같은 주요 용어의 명확성 여부와 법률안의 소급적 재산환수가 재산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2항 백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유사수신행위 등을 추가하고 몰수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범죄의 반사회성,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5항부터 47항까지 박완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공항시설공사의 임직원과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대상 범죄의 불법성과 대상자의 법적 신분,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1항 이찬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규정의 벌금 상한액을 선택형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형벌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형법의 무고죄 등과 형량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최교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상 등으로 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며 특별감찰 시 자료수집 권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특별감찰의 독립성 제고 및 감찰권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이 법에서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18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60항·61항 박광온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작량

감경 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재산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현행 법정형의 하한이 보호법익의 정도나 죄질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재산범죄의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쪽, 박광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대한 법정형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현행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으로 변경하고 법원의 보상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무죄가 된 실질적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결정기간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검찰청의 보상금 지급기한을 10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사법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그 금액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으로 고시되므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형사보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무죄판결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서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한 속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범죄피해자 등 증인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유지 등 합리적 사유를 설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72항 금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면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

공하도록 하며 법원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전제로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위원장’이라고 하지 말고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 자 뒤에 ‘님’ 자 붙이지 말고 그냥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서 경칭을 생략해서 그야말로 사무보고 하듯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75항부터 90항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90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86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전국을 관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문법원이 설치된 다른 분야에 상응할 만큼 해사 분야에 재판 수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전문법원 설치 외에 특성화법원 도입,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강화 등 다양한 전문성 확보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사법원 설치 여부 및 그 설치 지역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직무감찰 사항에 철도사업자 및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회계검사와 달리 집행부의 내부통제 기능이고 현

법이 감사원의 직무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2017회계연도에서 2027회계연도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등기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사업을 추진하여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과 등기특별회계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으로써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상호 비교하여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이 특별회계의 존치를 전제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등기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징계 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관 징계 사유가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추가할 경우 징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되 여성위원을 4명 이상, 법조인이 아닌 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법조인이 아닌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판결에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대법관 자격에 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추천위원회 위원을 국

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대법관 추천·임명에 있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권한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연 2회로 조정하고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까지를 규정한 경과조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년퇴직 시기 법정화는 다른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도모 및 인사 운영, 재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판연구원의 임기 조정은 판사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법조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정원 제한 규정의 경우 법관 순혈주의를 방지하려는 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대신 현행보다 일정 수 이상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형벌이나 인신구속을 면하는 대가로 변호사가 받는 보수로 잘못 인식될 수 있고 대법원도 2015년 이약정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바, 공정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변호사 선임 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89항도 생략하고, 하단 의사일정 제90항 정부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등의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에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등에 있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119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법률안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과 인터넷 화상장치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94항 법률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장기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은 보험금청구권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사무의 관할법원을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후견사무에 관한 감독의 연속성과 후견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 통합관리기관으로 국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변경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익인정 제도는 인가주의 취지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의 본인 확인 방법을 기명날인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명의 보편적 활용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일반인의 공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원고의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고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고된 판결의 판결서를 공개하면서 법원의 보호조치 의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부각되고 그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과거 3회에 걸쳐 해당 법률이 시행된 바 있고 부동산등기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구제가 어려운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 제기 절차, 배상금 분배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현재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의 특례를 인정하고 수소법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채권자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법체계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추심자의 추심 대상 채무 관련 정보의 서면 통보 의무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양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및 제11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출석한 증인이나 증거물의 제출 거부 또는 조사 거부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규정으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록 전부에 대한 송부 요구의 예외 없는 허용을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증언 등 거부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특수성, 민·형사 소송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헌법의 연혁적 해석상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관에게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관 자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또는 정년 도래 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하여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과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전부를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중 의사일정 제78항 정부에서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도 등기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윤상직 위원** 하나 좀……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우리 고유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1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킨……

○**위원장 권성동** 여기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17대 때 3건, 18대 때 1건, 19대 때 1건, 20대 때도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78항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을 제외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29항부터 119항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질의

(16시38분)

○**위원장 권성동**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그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그동안 또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유엔인권회의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정부 보고서입니다.

○**김진태 위원** 정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작성이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게 법무부 의견이 아니고요, 전체가 대한민국정부 의견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법무부가 취합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래서 대체복무제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개최했고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고 관련 부처도……

○**김진태 위원** 자, 장관님, 지금 현안질의니까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실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게 종전하고 달라졌어요, 입장이?

○**법무부장관 박상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고 현재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답변을 저런 식으로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이게 전에는 안 된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자꾸자꾸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균형법도 검토를 하겠다고 어디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날아온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김진태 위원** 이제는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지나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대체복무제가 논의가 되고 또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그 안에서 동성애 처벌은 폐지되고, 이것 정말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법무부에서 할 일이 과연…… 새 정부 들어와서 아무리 코드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부터 손을 봐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이렇게 균형법 몇 줄 바꿔 가지고 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체복무제 이런 것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먼저 다뤄져야 되고요. 국방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이것 그냥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슨 최순실 재산 환수 관련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것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됐어요. ‘공수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니 무슨 최순실 재산환수법이니 꼭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한명숙 재산 환수, 추징금 환수부터 제대로 하세요. 8억 8000 중에 250만 원 환수해 놓고 무슨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양형 사유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삼성의 승계 작업을 한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 재벌 재판들을 할 때 항상 국가의 경제라든가 그 회사의 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벌 재판을 쭉 지켜보면 재벌들은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다, 그리고 걸려도 유능한 변호사 쓰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왜 법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은 이렇게 재벌을 걱정합니까, 그 회사를 걱정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판단하는 검찰이나 법원부터 공히…… 재벌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무시하는데 이 무시당한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형에 대해서 처단형이 5년부터 4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5년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작량감경할 수 있는데 작량감경 안 했다. 도대체 이게 된 말입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물건 다 팔고 떨어 남은 것 90%로 파니까 ‘왜 정가대로 판매 않고 90% 세일하느냐’ 그러니까 ‘90% 세일하면서 10% 부가가치세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 부분 관련 있고 그 액수를 따져도 천문학적 숫자들이 있는 것인데 5년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작량감경 안 한 것이 잘한 것처럼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말씀하신 대로 양형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유로 양형에 이르게 됐는지

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하여튼 이게 1심 단계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국민적 감정을 존중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법무부장관님, 현재사무처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균형법 있잖아요. 개정 반대하는 것 광고 보셨지요? 보수 종교단체에서 반대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만큼 동성애 부분은 사회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많이 수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만 보고 가지 마시고 좌우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그래 가지고 지금 보수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박주신 씨 증인출두요청서 송달이 됐나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송달이 안 된 것으로……

○윤상직 위원 도착이, 한국 사람이 그게 안 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윤상직 위원 언제 송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글썄, 재판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윤상직 위원 송달 책임의 일부는 또 법무부장관께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서가 가거든요, 송달서가.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이 부분 또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저도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요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묵시적 청탁, 그다음에 포괄적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이래 가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2중, 3중, 4중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스며듭니다.

법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물론 판례이기는 하지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계에서, 재계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멘붕입니다. 자, 정경유착과 정책협조가 무슨 차이나 이거예요.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판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기업계는, 재계는 더욱 더 걱정이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진행 중이지만 법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재계 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해소시켜 주는 데 앞장서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판례를 통해서 그것은 구체적 기준은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천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용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 회식 사건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조용천 위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묻는 게 참 마음은 아깝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묻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 외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건을 또 수사 중이래요,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는 했는데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한 결과 그게 있어야 사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중앙지검 측에다가 감찰 결과 자료제출요청을 6월 달, 7월 달, 2회에 걸쳐 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고, 진행이 안 되

고 있고 고발한 시민단체는 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자기 식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머리를 제대로 깎지 못해서 항상 비난을 자처했고 또 버티다가 버티다가 특임검사 임명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런 전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경찰과 검찰이 검사의 비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수사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렇게 다투는 모양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장관님,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건을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기관이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대립되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동일한 사건을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불필요하게 수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문제는 경찰이 감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못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서 못 준다 하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안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것 그동안에 많은 사건으로 보여 왔고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해결하셔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알겠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이었고요. 같은 날 삼성 이견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몰카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몰카 사건의 형량과 88억, 특히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이 88억 뇌물 사건의 형량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에 대해서는 선고되었던 형량을 2심에 가서는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사례들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3·5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떨어지면서 집행유예 5년이 나왔고요.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6년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9년 삼성 이견희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아, 재벌들은 결국 다 빠져 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 부분은 법원 차원에서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또 재판 사항이라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어떻게 하기는……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50억 이상 뇌물을 준 경우에 아예 작량감경을 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형의 하한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관련법의 개정법률안이 제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심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어제도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마는, 남상소의 문제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적 중에는 부실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가 철저하지 않아서 기각이 된다든지 패소가 된 것을 법원의 탓으로 돌리는, 법원이 심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지 견해가 다른 그런 탓으로 돌리는 문제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실장으로 검사 아닌,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전직 판사 또 변호사 업무를 한 이용구 실장이 지금 임명이 되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법무실의 주요 행정 중에 송무 지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공소유지, 남상소의 문제는 어제 업무보고 차원에서 있었고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공소유지 철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특히 박근혜정부에서—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제 기억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대문짝만하게 언론을 장식했던 중요 사건의 수사 와 기소에서 끝납니다. 나중에 다 무죄가 나면, 방산비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무죄가 나도 그 사건을 처리했던 수사검사는 오히려 영전합니다.

잘 아시지요, 장관님? 영전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단 한 사람도 수사의 한계라든지 수사의 어떤 부실, 이 점이 평가된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패소 난 그 사건이 오히려 무슨 훈장을 단 것처럼, 훈장을 받을 만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과 견해가 달라서 진 것일 뿐이다’. 최종적

인 심판은 법원이 하는데요 법원과 견해가 달라서 지면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번에 법무실장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아주 밝은 인사를 지금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송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다 진행중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법무 단위에서 이 송무의 지휘 기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실 1심 무죄 사건에 대해서 무작정 항소·상고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무리한 기소를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소 단계에서만 아니라 1심 무죄 이후의 상소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고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그런 국민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대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기소 여부에서부터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장관님, 어제인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 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대폭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법무부 복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양보할 것인지?

○**법무부장관 박상기** 구체적인 양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외부적으로 어떤 권한 배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

가는, 회복하는, 환원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뭐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본래의 기능이라는 것은 검찰은……

○**위원장 권성동** 기소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립적인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요.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복안이 나왔네요, 장관님 복안이.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또 국회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위원장 권성동** 국회 의견은 법무부에서 의견을 만들면 법무부의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의 의견은 고려하지 마시고 법무부에서 빨리 의견을 내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박법계 위원께서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수도 없이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권의 성향에 맞는 기소나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위원장 권성동** 지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도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무죄난 부분이 더 크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1심에서, 이번에 삼

성 특검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요. K·미르 재단에 재산 출연한 것도 뇌물로 기소를 했어요. 저는 그 기소를 보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록을 검토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님나 다를까 무죄가 나더라고요. 나머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인정된다고 해서 거기서 무리하게 서너 개를, 한 네다섯 개를 얹어 가지고 기소하고 나중에 일부 유죄 나면 ‘유죄 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최종 선고가 나면 거기에 관여했던 파견검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파견검사들의 잘못이 있는지 그것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포폴리즘적인 기소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개만 방어하면 되는데 5개, 10개를 방어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중요 사건 중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어요. 1개는 명백하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인정될지 말지 하는 것을 전부 기소를 해 버려요. 이런 관행도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만날 ‘국민의 인권, 인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하여튼 무리한 기소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하고 그걸 반드시 인사에 반영하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정갑윤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를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부처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금태섭	김진태	박범계
박주민	박지원	백혜련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이용주	이춘석
정갑윤	정성호	조응천	주광덕

○청가 위원(1인)

노회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강병훈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경찰청장	이철성
소방청차장	우재봉
감사원장	황찬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사무처장	김용현
------	-----